

침몰선박 관리사업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

박기철* · 나선철** · 황인서** · 이승현***

*, ** 해양환경관리공단, ***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

A Study on Advanced Progress of the Sunken Vessels Management Business and Policy Direction for Management of Sunken Vessels

Ki-Cheol Park* · Sun-Cheol Na** · In-Seo Hwang** · Seung-Hyun Lee***

*, **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, Seoul 05718, Korea

***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hips and Ocean Engineering, Daejeon 34103, Korea

핵심용어 : 침몰선박, 해양환경관리법, 나이로비협약

Key Words : Sunken Vessel,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, Nairobi International Convention

침몰선박 관리사업 개요



▶ **(배경)** 침몰선박 경신호(유조선, 955톤) 잔존유 제거사업 추진 이후 국가 차원의 침몰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제기
* 2010~2011년 2개년 사업으로 정부예산 253억원을 투입하여 잔존유 634㎥ 회수

▶ **(근거법령)** 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의2(침몰선박 관리) <2012.12.18>

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로 침몰된 선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
2.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 평가
3.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

▶ **침몰선박 관리사업(2014년~, 해양수산부→해양환경관리공단 위탁)**

1

침몰선박 조치 법령체계



▶ **(국제협약)** 난파물제거협약('07년 나이로비 채택, '15.4.14. 발효)



▶ **(국내법률)** 난파물제거협약 주요내용은 해사안전법에 반영

구분	해사안전법	선박인출법	공유수면관리법	해양환경관리법
관점	선박의 안전운행	선박인출 및 유지	공유수면 효율적 이용	해양오염사고 예방
응용사유	합법정착물	중요물	방치선박	침몰선박
처리절차별 주체	①발생포고(선주) ②위치경고(해수부) ③위험성평가(해수부) ④위치포고(선주) ⑤제거(선주)	①포고(선주) ②제거명령(해수부)	①포고(공유수면관리청) ②제거명령(-)	①정보보고(지방청) ②정보관리(공민) ③위해도평가(공민) ④저감대책 실행(해수부)

3

침몰선박 관리사업 현황



▶ **(침몰선박 현황)** 2016년말 기준 국내해역 침몰선박은 총 2,180척

- (규모별) 100톤 이상 선박 279척(12.8%)
- (선종별) 위해성 우려선박 129척(6%) / 여선 1,771척(81.2%)

▶ **(추진경과)** 국내해역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평가(2014년)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대상선박 32척을 선정하여 2015년부터 현장조사 중

<단계별 현장조사 계획>

구분	2015	2016	2017	2018	총계
대상 선박	3척	8척	5척	15척	31척
소요예산	2억원	6억원	3.5억원	10.5억원	22억원

2

침몰선박 관리 정책방향



▶ **침몰선박 관리 정책 제언**

단기적 조치 관점 (해사안전법, 공유수면관리법 등)	장기적 관리 관점 (해양환경관리법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효소멸 전 적극 조치(지방청 중심) ▶ 관련부서간 협조체계 강화 ▶ 난파물제거협약비준 검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확한 현황 파악(100톤 이상 중심) ▶ 현장조사 대상선박 확대 ▶ 위해도 평가체계 고도화

국내해역 침몰선박의 체계적 관리

4

* Corresponding Author : nmpa120@koem.or.kr